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하여

2004년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의 위치

연세대학교에는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반성폭력 학칙이 존재한다. 이는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2000년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으니 벌써 제정 5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제 반성폭력 학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쯤은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떠한 '규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만이 그 규정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학교 학칙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처리 및 예방에 대한 규정'인 반성폭력 학칙은 그 의미와 목적을 잘 실현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제정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작년 200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만 보아도, 성폭력 사건이 반성폭력 학칙으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만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야기를 풀어내보려 한다.

반성폭력 학칙의 의미

처음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때의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반성폭력 학칙을 왜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반성폭력 학칙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총여학생회 및 여성주의 자치단체, 각 학생회가 벌여온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진행했던 학생 단위들은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와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닌 대학, 이러한 학내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엄정히 해결하여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한 성폭력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학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갔던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닌, 절박한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성폭력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개념 정의이다.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라고 반성폭력 학칙에는 정의되어 있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개념 규정이라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는 각 개인을 성적인 '주체'로 인정할 때에야 적용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법률상에서 조차 '여성', '피해자'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음에 반

해,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일뿐더러, 성폭력 사건을 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는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을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반성폭력 학칙의 성폭력 개념 규정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하겠다. 사회 어느 곳에서도 담보되기 힘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만큼은 보장해내기 위해, 또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을 규정하는 지극히도 당연한 원칙을 실현시켜내기 위해 고통스럽고 기나긴 싸움을 가열차게 벌였던 여성운동 단위와 많은 학생들의 힘이 근본적인 바탕과 동력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과 운영은 완전한가

반성폭력 학칙의 본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그 목적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 그 자체의 부실함과 자격 없는 성폭력 대책 위원들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반성폭력 학칙의 실효성을 방해하고 있음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반성폭력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되었을 때 학칙에 따라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오히려 학칙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가 하면,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풍부하지 못해 삼가야할 언행을 하는 실수도 많았다. 대책위원회부터가 학칙에 따라 철저히 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리된 성폭력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칙 자체를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와 관련하여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학칙 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현재의 학칙이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성폭력 학칙은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연세 구성원간의 폭넓은 토론과 공론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 학칙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학칙의 적용 대상은 교원의 경우 교수와 시간강사, 학생인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직원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이 몇 가지의 예시들만으로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학내 구성원들을 포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가해자가 조교와 외부 초청 교수인 경우, 교환학생, 제적생, 혹은 정규직원이 아닌 임시직원일 경우, 그들이 학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논란의 와중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아예 소집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칙에 의한 사건 해결이 공중에 떠 버리게 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괄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2. 피해자 보호 조항

(1)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첨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 경험을 상기해야 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설득해야'만' 할 것 같은, 혹은 실제로 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또한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한다.

(2) 학칙에 명시된 성폭력 사건 공개 조항을 엄수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이며, 사건 발생 시 공동체 내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건 공개가 필수적이다. 실질적인 사건의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공개의 방법과 기간이 학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3)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의 보호에 대한 조항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

3. 가해자 징계 조항

(1) 가해자 강제 소환 규정이 필요하다.

가해자들이 강제 소환 규정이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출석하지 않고 징계를 쉽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의 불출석을 제재하고 절차를 진행시킬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불협조로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학칙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가해자 공개 사과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가해자의 공개 사과는 가해자의 사전 동의라는 조건이 필요 없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현재 학칙에서는 제14조에서 '징계 및 조치'라고 명시만 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징계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치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덧붙여 사과문의 공개 기간을 명시하여, 매체에 게재되는 방법이 아닐 경우 얼마간의 기간 동안 공개할 것인지를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4. 성폭력 대책위원의 자격/ 대책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

(1) 대책위원들은 사건 해결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책위원들이 사건 해결 당사자로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감수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책위원들에게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대책위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책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또한 명시해야 한다.

(2) 학내 성폭력 상담실 상담원이 대책위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현 학칙에서는 학내 상담실의 상담원이 대책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상담실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가해자 면담, 사건 조사 등 실질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작업은 상담원이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대책위에서 상담원은 아무런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담원이 애써 피해자 입장에서 구성해 놓은 사건 이해가 대책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3) 외부전문위원의 대책위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현 학칙에서는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쓸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을 만들어 놓았지만,

선택 사항이다 보니 실제 외부전문위원을 대책위에 참여시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대책위에 참가시키는 조항을 의무화해야한다.

(4) 대책위원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징계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조차 체득하고 있지 못한 대책위원들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해야할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에서 버젓이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책위원들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폭력 상담실과 예방교육

(1) 성폭력 상담실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서는 여학생처에 상담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실이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해결시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여학생처의 하위 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간과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상담원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는 상담실의 상담원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없다. 그저 [시행세칙] 제4조(상담원의 자격)에 '상담원은...(중략)...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는 모호한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상담원의 자격 조건에 대해 좀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예방과 홍보 및 교육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서는 시행세칙에 그저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란 힘들다. 학생과 교수, 강사, 교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4) 사건 해결 및 처리 과정이 강화 및 보완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칙에는 자세히 서술되어야 할 내용들이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우선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혹은 피해자 대리 신고인)이 어떻게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해줄 '교내·전문가 또는 기관'도 보다 자세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내 전문가라는 부분은 매우 모호한데, 교내에서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할 수 있을만한 기관은 상담실밖에 없고, 따라서 사건을 신고 받고 해결해야 하는 상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맡는 것은 피해자에게나 상담실에게나 모두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학외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심리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비민주적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대책위원장은 비민주적 대책위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지난해까지의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 자리를 살펴보면 이미 명시되어 있는 학칙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는 비민주적 행태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개정 되지 않은 현재의 학칙에도 성폭력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조항으로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13조 (회의))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실제 지난 해 열렸던 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는 단 한번도 의결이 진행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책위원장의 결정이 대책위의 결정으로 관철되어왔다.
심지어는 대책위원장이 '바쁘다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대책위원장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함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독단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책위원장 개인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속전속결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하는 모습은, 대책위원장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하고 경솔한 태도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학생위원들은 분명히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함께 논의하는 '위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책위 테이블에서는 학생위원들의 생각을 학생 '위원'의 의견으로 수용하여 동등한 무게로 결정에 반영시키지 않고 단지 한 학생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해 왔다.

학칙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책위원들이 성폭력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며, 대책위의 운영 자체도 민주적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 방학이면 교환학생 온 여자애들이 벗고 다녀서 걱정이다'(웃음)과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되고 있는 등,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턱 없이 부족하며 그 운영 또한 파행적이다. 대책 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위원에 대한 교육, 외부 전문 위원 참가, 학생위원과 여성위원 비율 확대 등의 조항이 학칙 개정안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의 대책위는 이런 보완책이 포함된 내용으로 학칙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학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성폭력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대책위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된 민주적 의결절차를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대책위원장과 대책위원의 선임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위원 선임에 관해 학생들이 아무런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책위원장이 지난 한해 동안의 대책위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다. 또한 대책위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과 징계가 필요하다.

행복한 여성주의 16대 총여학생회